

# 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36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. 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21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체육진흥기금

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하여 평창군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치금을 체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(단위:천원)

기금명	계획액	기정계획액	비교증감
합계(7건)	6,907,526	6,907,526	0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,051,451	1,051,451	0
<b>체육진흥기금</b>	<b>1,506,155</b>	<b>1,506,155</b>	<b>0</b>
식품진흥기금	149,905	149,905	0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60,240	60,240	0
재난관리기금	2,440,375	2,440,375	0
옥외광고발전기금	120,339	120,339	0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1,579,061	1,579,061	0

## 3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 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